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출론바트 아리온빌렉

2018년 8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연구

지도교수 이인회

출론바트 아리온빌렉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출론바트 아리온빌렉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연구

출론바트 아리온빌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지도교수 이인희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권한과 구조 및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준거를 바탕으로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권한: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둘째,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교육부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를 중심으로; 셋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와 바양-울기 도(aimag) 교육행정청을 중심으로; 넷째,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

본 연구에서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한국은 국가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운영관리 기능도 갖는 국가교육행정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둘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한국은 지역교육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분리,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반행정에서 결정한 교육적 사항을 실행하는 비독립적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단위학교 행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 경험 부족, 지방교육자치 부재, 교육행정에 시민참여의 불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적 관리 미흡의 네 가지 이다. 둘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출한 방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권한 이양,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 지방의 특수한 교육정책 개발 추진,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감독 및 평가제도 명확화 등 네 가지 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계층별 권한의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권한은 중앙에서 지방, 지방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있으나, 몽골의 경우는 교육권한의 대부분이 정부의 중앙교육행정기관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몽골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 및 일부 의결 권한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상당 부분이 독립되어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구조이다. 반면에 몽골의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구조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지방일반행정기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수직적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평적으로 지방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기능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전국의 교육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의 의결 및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몽골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법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지역교육을 수행하는 집행기능만 갖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집행과 관리 기능을 넘어 당해 지역에 대한 의결기능까지도 수행해 나갈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2
4.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4
1.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4
가) 한국의 교육행정체제	4
나)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7
2. 지방교육자치제도	11
3. 분석의 틀	14
가) 연구 대상	15
나) 분석의 준거	15
다) 분석의 체계도	15
III.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분석	17
1.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17
가) 중앙교육행정기관	18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21
다) 단위학교	31
2. 몽골의 교육행정조직	33
가) 중앙교육행정기관	34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37
다) 단위학교	49
3.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조직 비교	55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비교	55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비교	57
다) 단위학교의 비교	58
IV.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	61
1.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61
2.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	64
V. 결론 및 제언	69
1. 요약	69
2. 제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6

표 목차

<표 III-1> 교육부 권한	18
<표 III-2> 교육위원회 권한	21
<표 III-3> 교육감 권한	22
<표 III-4>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별 주요 기능	24
<표 III-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기능	28
<표 III-6>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32
<표 III-7>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34
<표 III-8>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부서별 교육적 주요 기능	36
<표 III-9>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적 권한	38
<표 III-10> 시·도교육청의 운영방안	40
<표 III-11>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부서별 교육적 주요 기능	44
<표 III-12> 2017-2020년도 울란바토르 시지사의 교육적 계획	45
<표 III-13> 바양걸 구 교육부서의 구조 및 기능	46
<표 III-14>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교육적 주요 기능	48
<표 III-15> 바양-울기 도 지사의 2016-2020년도 교육적 계획	48
<표 III-16> 학교 교장의 권한 및 기능	50
<표 III-17>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및 회원의 기능	51
<표 III-18> 학교 교장, 교감의 기능 및 주요 업무	51
<표 III-19> 학교 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54
<표 III-20> 한국과 몽골의 중앙교육행정체제 비교	55
<표 III-21> 한국과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비교	57
<표 III-22>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 비교	59
<표 IV-1> 중앙, 지방, 단위학교의 바람직한 관계	65
<표 IV-2>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관계	66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의 학제	6
[그림 II-2] 몽골의 학제	9
[그림 II-3] 연구 분석의 체계도	16
[그림 III-1]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	17
[그림 III-2] 교육부 조직도	20
[그림 III-3]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24
[그림 III-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도	28
[그림 III-5]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체제	33
[그림 III-6]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조직도	36
[그림 III-7]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조직도	43
[그림 III-8]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 조직도	47
[그림 III-9] 단위학교 행정체제 조직도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릇 한 나라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로 나누어진다. 교육행정도 이처럼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로 나눈다(남정걸, 2015). 한국의 경우는 교육행정이 지방자치체제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분권적 지방교육행정체제가 설립되어 있다. 반면에 몽골의 경우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은 모두 중앙 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Nanjid & Enkhbaatar, 2014).

몽골에서는 2002년부터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분권적 방향을 가지고 교육행정체제 개혁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교육 수준 특히 지방의 교육 수준, 즉 지방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몽골이 유목과 목축업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과 도시의 문화 간에 격차가 큰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몽골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인간 개발, 학습 능력, 문화, 기술, 교육 등 사회적인 변화를 따라 갈 능력이 매우 낮다.

1994년부터 몽골의 지방과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Madsen(1994)은 12살 몽골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도에 사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지방에 사는 아이들의 학습능력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몽골 학자 Batdelger(1996)도 몽골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지식 개발이 지방에 사는 아이들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Nanjid & Enkhbaatar, 2014). 2011년에 국제교육평가기관과 독일, 미국, 케나다 등이 추진한 “TIMCC-PIRLC 2011” 연구는 몽골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몽골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았고, 특히 도시 학교보다 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점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의 대학 입학

시험 점수를 살펴보다도 도시학교의 아이들은 지방학교의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학교에서 공부하는 몽골 아이들의 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권한과 구조 및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은 어떠한가?

셋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독특한 역사의 발전과 문화적 전통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행되기에 양 국가의 교육행정체제를 상호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한이 많고 경험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교육행정체제

교육행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내의 협동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육행정조직이다. 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시·도교육청→시·군·구 교육지원청→단위학교의 중층구조 내지 상·하위 체제로 연계되어 있다.

나)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크게 영국과 미국 중심의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단체 자치의 두 역사적 전통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각국의 현 자치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민봉, 2016).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이란 전 국가적인 공공사업이면서 동시에 지방마다 각기의 특수성을 지닌 지방적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지방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본 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교육행정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지정학적 특성, 교육제도, 그리고 교육행정조직을 정리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비교할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가) 한국의 교육행정체제

1) 지정학적 특성

대한민국의 면적은 100,411,36 km²이며, 전인구는 51,778,544 명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다. 3단계 행정체제로 도/특별시/광역시, 시/군/구,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시 아래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¹⁾. 이들 중 도와 동급의 행정구역은 광역시이며,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존재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시 : 서울특별시
- ② 광역시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③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④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⑤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7. 12. 31. 기준)

2) 교육제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된 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단선형 학제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던 6·3·3·4제 학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제도로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기간으로 하여, 먼저 초등학교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한 뒤 2002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시작해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교육대학(4년)·사범대학(4년) 등의 교원 양성기관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의 대학, 기술학교(3년), 고등기술학교(3년), 공민학교(2~3년), 고등공민학교(2~3년) 등의 비정규학교가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유치원 등을 두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Altangoo, 2015: 7).

한국의 학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Ⅱ-1]과 같다.

학년								연령		
3	대학원							28		
2								27		
1								26		
4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방통대	기술대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25
3					24					
2					23					
1					22					
12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부고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21	
11				20						
10				19						
9	중학교			방통중	산업체부중	특수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18
8				17						
7				16						
6	초등학교							15		
5								14		
4								13		
3								12		
2								11		
1	유치원							10		
								9		
								8		
										7
										6
										5
										4
										3

※ 출처: 윤정일 외(2009: 251).

[그림 II-1] 한국의 학제

3) 교육행정조직

교육행정이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법규나 정책을 입안 또는 집행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정비 확립하며 교육조직 구성원의 협동적 행위를 능률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의 과정이다(남정걸, 2015).

교육행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육행정조직이다. 교육행정

이 어떠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실시되며, 어떠한 권한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조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행정조직은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교육부와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핵심은 교육부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자치체도를 가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구분된다.

나)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1) 지정학적 특성

몽골 국토의 면적은 1,564,116km²로 세계에서 17번째로 넓으나 인구는 3,051,900명으로, 세계에서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다. 몽골의 행정구역은 수도 울란바토르, 21개의 도(아이막), 9개의 구(두레그), 315개의 군(쑤)으로 구분된다. 수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다.²⁾

몽골은 아직까지도 유목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것이 몽골 문화의 큰 특징이고 유목 목축업은 몽골의 경제적인 큰 자원이다. 몽골의 넓은 땅에는 도시와 지역의 작은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이 많다.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민들의 아이들을 한 데에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들어 몽골 수도의 인구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시골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인구가 적어지고 있다.

2) 교육제도

현재 몽골의 교육제도는 교육법(2002) 제7조에 따라 공식적(Formal Education System) 교육제도와 비공식적(Non-formal Education System) 교육제도를 통합하여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2) (<https://en.wikipedia.org/wiki/Mgl>)

법(2002) 제7조 제1항에는 공식적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은 교육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비공식 교육의 내용은 자유롭다고 정할 수 있다.

몽골의 단위학교는 12년제(5-4-3)이며, 2008년 9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초·중·고등학교가 한국처럼 별도의 학교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한 고등학교 안에 1학년부터 12학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골 헌법에 따라 국가에서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몽골에는 총 778개의 단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는 645개이고 사립학교는 133이며,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225개의 학교가 있고 지방학교는 553개이다. 학생 수는 2017년 기준으로 551,953명이며, 공립학교에는 520,201명, 사립학교에는 31,752명이다³⁾.

현재 몽골에서는 교육개발과 몽골교육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교육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교육정책은 “교육 국가 프로그램: 2010-2021”과 “교육에 관한 국가정책: 2014-2024”이다.

첫째, “교육 국가 프로그램: 2010-2021”의 목적은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는 사회적 필요성에 맞게 안정적인 개발을 충족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넘어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제도를 국제교육 수준과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에 관한 국가정책: 2014-2024”의 목적은 국민의 재능, 능력개발, 윤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키워주고,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몽골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2]과 같다.

3) www.mecss.gov.mn

학년				연령			
3				24			
2	대학원		고등교육	23			
1				22			
4	대학교			21			
3				20			
2				19			
1				18			
12	고등학교	기술 전문대학		전문대학	17		
11						16	
10					15		
9	중학교				중등교육	14	
8						13	
7						12	
6						11	
5	초등학교					초등교육	10
4							
3							8
2						7	
1						취학 전 교육	6
	유치원				5		
			4				
				3			

※ 출처: 이찬희(2007: 17).

[그림 II-2] 몽골의 교육 학제

3) 교육행정조직

몽골의 교육행정조직은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몽골의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가 중심이지만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된다.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기관이지만 시·도교육청이 시·도지사에게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시·도지사와 군·구지사의 역할도 크다.

4) 학업성취도 격차

몽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해마다 진행되는 수학능력시험 결과에서 볼 수 있다. 몽골의 수학능력시험은 해마다 6월 달에 전국적으로 실행되며,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 12년 동안 공부한 결과를 파악하고 바하는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017년 수능능력시험에 결과에 대하여 수도권 울란바토르에 포함된 9개의 구와 21개의 도로 구분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수능능력시험의 최대 점수는 800점이며, 2017년도 수능 평균 점수를 500점으로 정하였다. 즉 500점에서 800점까지의 점수는 평균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는 40,388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렀다. 울란바토르 시에 포함되는 9개 구 학생들의 수능결과를 보면 최소의 점수를 받은 구는 533.3점을 받아 평균 점수에서 33점 높았으며, 21개의 도(지방)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최소 점수를 받은 도(지방)는 528.1점을 받아 평균에서 28점이 높았다.

시험결과를 수업별로 구분하면 수학 시험에 경우 수도권 울란바토르에 포함되는 9개 구 중 최소의 점수를 받은 구는 524점을 받아 평균에서 24점 높았으며, 9개 구에서 5개의 구 학생들은 평균점수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21개의 도(지방)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4개 도는 평균에서 높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영어와 러시아어 시험결과는 21개 도 지역에서 4개의 지역은 평균에서 높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낮았다. 국어(몽골어) 시험 결과를 보면 10개의 지역은 평균에서 높았으나 11개의 도 지역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지역 별로 결과를 구분하면, 수도권 울란바토르에서 400km 떨어져 있는 지역 학생들의 시험결과는 528점으로 평균 점수에서 28점 높아 수도 울란바토르 학생들의 시험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수도에서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일 먼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44점 낮았다.

이러한 수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의 학업성취도는 수도에 포함되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보다 30점정도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몽골 교육에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특히 수도에서 먼 지역의 학업성취도는 낮았으며, 이는 지역별로 문화와 교육개발 등에 따라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몽골의 수도 학생들과 지역학생들 간의 건강, 심리적 개발, 교육능력 등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던 Oryol. N(1998)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4) www.montsame.mn

다. 이 여구는 수도와 지방의 1000아이를 포함시켜, 새로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발적 능력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새로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수도 아이들보다 지방 아이들이 높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식을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방 아이들보다 수도 아이들은 높은 결과를 받았다.

Madsen(1994)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도와 지방 아이들의 학습능력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12살 몽골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도에 사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지방에 사는 아이들의 학습능력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몽골 학자 Batdelger(1996)도 몽골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지식 개발이 지방에 사는 아이들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Nanjid & Enkhbaatar, 2014). 이 연구에서는 수도 울란바토르와 6개의 지역 총 7개 지역을 선택하여, 5-13살 아이들의 지식개발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도시 아이들은 지방 아이들보다 지식 개발 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지방과 도시 학생들의 학습능력 차이의 중요 원인은 잘못된 교육제도와 능력 없는 교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2011년에는 국제교육평가관과 독일, 미국, 캐나다 등이 추진한 “TIMCC-PIRLC 2011” 연구는 몽골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에 있는 학교 12개, 지방 학교 28개를 선택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313명, 중학교 3학년 학생 1,29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의 국어 능력, 중학생들의 수학과 자연학 능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몽골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았고, 특히 도시의 학교보다 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도 울란바토르 평균은 수학의 경우 28,3%, 자연학은 33,6%로 나왔으며, 지방의 경우 제일 낮은 점수는 17,0% 정도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몽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 능력은 수도와 지방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교육자치제도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이라는 의미(교육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의미(지방분권)가 내포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81: 90)는 교육자치제도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종철과 이종재(1994: 211)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 격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여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와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윤길(2000: 249-270)은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교육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곽영우 등(1994: 99)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1999: 15)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지방분권의 사상과 민주통제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 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광제(1997: 183-214)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교육제도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식과 최희선(1988: 339)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

성의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통치제도라고 정의하였다.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12: 153).

첫째로 지방분권의 원리가 이다. 이러한 원리는 교육행정상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정책 수립과 사무 처리를 하려는 것이다. 지방적인 특수성을 살림으로써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통일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의 교육 활동을 통한 자율자치 정신을 배양하려는 데 뜻이 있다.

둘째로는, 민중통제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와 더불어 민주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곧 민중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정치의 이념과 상통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한 민의를 존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셋째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이다. 즉 교육사업의 특수성이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이것은 분리·독립의 원리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전문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리는 교육 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잡다기한 교육행정 기술면의 훈련을 쌓음으로써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제도는 물론, 교육행정 전문직에 의한 행정을 포함하여 그 효율적 운용을 말하는 것이다.

3. 분석의 틀

왕 흥(2011)은 한국과 중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비교 연구를 양국의 교육행정기관의 정부기능(행정기능) 및 정부역할(권한배치, 행정책임)에 초점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2009)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동향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비교연구를 다음과 같은 준거로 분석하였다.

- ①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
- ② 교육행정계층별 기능 배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단위학교
- ③ 지방교육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향후의 개혁동향
- ④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성격과 구조: 지방교육행정기관 형태, 조직형태, 관할범위, 주요기능, 의사결정체계, 인력 및 재정규모, 학교와의 관계
- ⑤ 단위학교 구조: 교장선임과정, 교사평가 과정, 학부모의 학교 행정 참여방법, 교사의 행정업무 수행상태. 행정보조인력

이인희 외(2011)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았다.

- ① 교육연계·협력 추진 체계 현황 분석
- ② 교육연계·협력사업 분석
- ③ 우수사례 분석

그리고 정영수 외(2009)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준거는 정책환경의 변화 전망,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와 쟁점, 주요국의 교육행정체제 분석 등이었다.

이상의 교육행정체제의 비교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각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의 주요기능, 권한, 구조와 성격 등에 초점을 두고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리고 단위학교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교육행정체제 개혁 방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관련 법령 분석, 방문 조사, 추진 체계 현황 분석 등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하며, 설정한 연구 대상, 분석 준거와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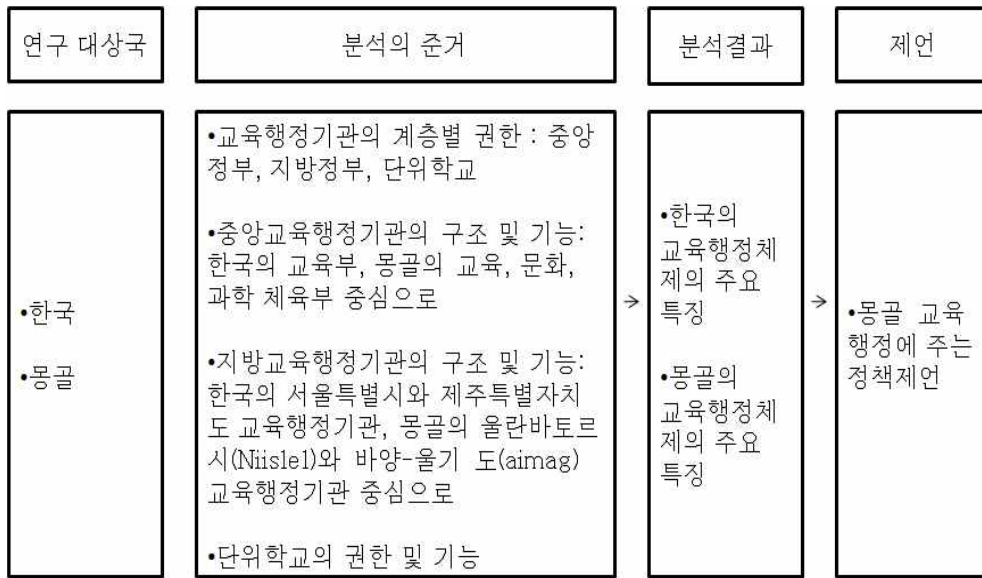
이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즉,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리고 단위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나) 분석의 준거

- ①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권한: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 ②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교육부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를 중심으로
- ③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몽골의 바양-울기 도(aimag) 교육행정청을 중심으로
- ④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

다) 분석의 체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분석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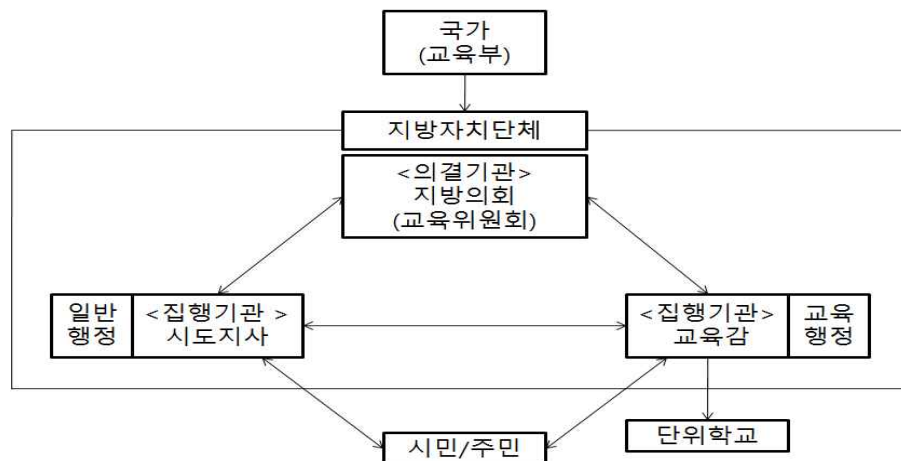
[그림 II-3] 연구 분석의 체계도

III.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살펴보면서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의 교육행정체제를 중앙, 지방, 단위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권한과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의 교육행정체제

교육기본법 제5조[전문개정 2007.12.21.]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해야 하고, 제1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 사회교육,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국가(중앙교육행정)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체제는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 출처: 최진혁(2005: 534)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그림 III-1]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가) 중앙교육행정기관

1)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정부조직법 제2조[개정 2017.7.26.]에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기본법[전문개정 2007.12.21.]에 기록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교육부 권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 •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유아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
-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 되도록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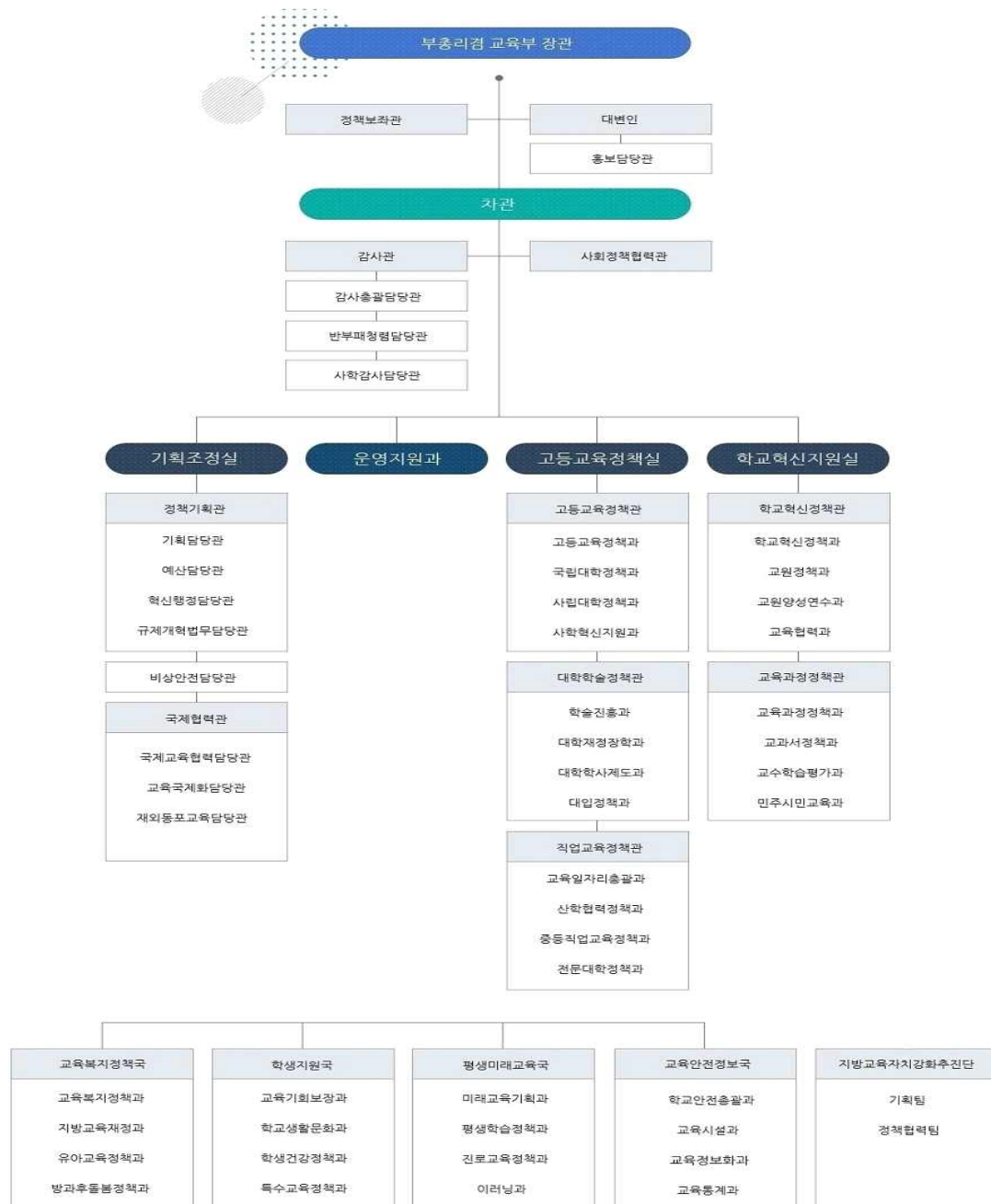
국가의 교육적 권한

-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
-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
-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출처: 교육기본법[전문개정 2007.12.21.]

2)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정부조직법 제19조[신설 2014.11.19.]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에 차관 1명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교육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교육부 조직도(2018.04.04.기준).

[그림 III-2] 교육부 조직도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인력개발과 과학진흥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둘째,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셋째,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

한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체제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법률 제10046호(2010.2.26.)]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0046호(2010.2.26.)]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표 III-2>와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표 III-2> 교육위원회 권한

교육위원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起債案)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출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또한 동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다음 <표 III-3>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표 III-3> 교육감 권한

교육감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출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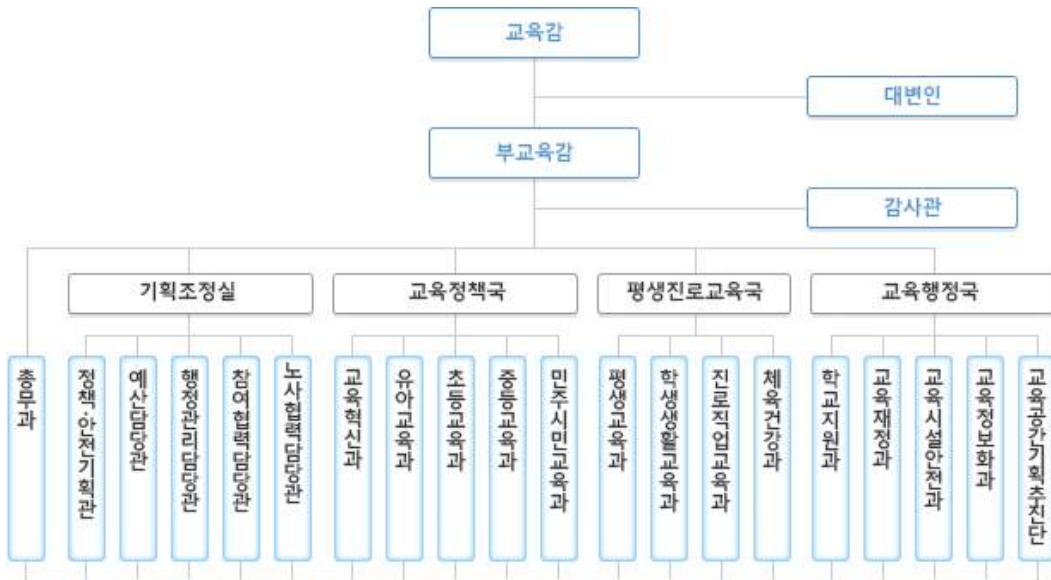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다. 시·도교육청 구조, 기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을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와 424개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전인구는 9,857,426명이다⁵⁾. 서울특별시 총 학교는 2,239개(유치원 포함)이며, 학생 수는 1,037,349명, 교원 수는 78,108명이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다. 서울특

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17. 12. 31. 기준)

별시교육청의 구조는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11개 교육지원청, 29개 산하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을 포함하며, 조직도는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2018.04.05.기준)

[그림 III-3]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표 III-4>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		기능
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 점검, 민원조사 실시 감사원,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예방·지도 점검 법률위반 공무원에 대한 업무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시민감사관제 운영
기획조	정책, 안전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서울교육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서울교육 주요정책의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운영

정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및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정책 맞춤형 통계 개발 • 서울교육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및 위기상황 시 총괄 대응 	
교 육 정 책 국	교육혁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혁신 기획·운영 • 혁신학교 지정·운영·관리·성과평가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 전기고(국제고, 외고, 예술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자율학교 운영, 자공고 지정 운영 •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및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 • 과학·환경·영재교육, 융합과학인재교육(STEAM) 운영 •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교육,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업무 • 무상 교과서 지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유아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운영 •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 유아 도덕·인성교육 업무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업무 총괄, 생활지도 • 유·보 협력사업 관련 업무 • 사립유치원 재정,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관리 및 안전 교육
	초등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장학활동 기획·운영 및 학생 중심 문화개선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개선 • 기초학력향상 지원 및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초등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업무 추진
	중등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업성적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고 학적관리 •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외국어교육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시행하여 교원의 사기진작 및 단위학교 교육성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전문직 인사행정 구현 • 사립학교 교원 인사행정의 통일성, 일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여 투명화, 합리화, 효율화 추구 • 초·중등교사(공립유치원·특수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기획·조정
	민주시민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 및 봉사활동 운영 지원 • 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및 생태환경 교육 • 북한이탈학생 지원 업무 및 국제이해교육 •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및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 동아시아 역사 수업교재 제작·보급 등 관련 업무 • 독서교육 총괄 및 독서 연계 토론·논술 교육 지원 •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및 독서 외부자원 연계 사업 •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업무 • 역사교육 역량강화 지원 • 학생인권 관련 업무
평 생 진 로 교 육 국	평생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해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 평생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교육·문화·예술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 학원의 자율 정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도모 • 비영리(공익포함)법인의 공익성 유지 및 건전한 활동 도모
	진로직업교 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진로적성교육 체계화 • 맞춤형 진로·적성교육 지원 • 교원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 •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확대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현장교원 연수 확대 • 특성화고 무상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취업지원 • 실무 중심의 기능인재 육성 • 산업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학생수용계획 수립 • 후기 일반고 학생 배정 •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 학교법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예결산 관리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2018.04.05.기준).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다. 자치행정구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만 존재한다. 하위 행정구역은 7읍 5면 31동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인구는 657,083 명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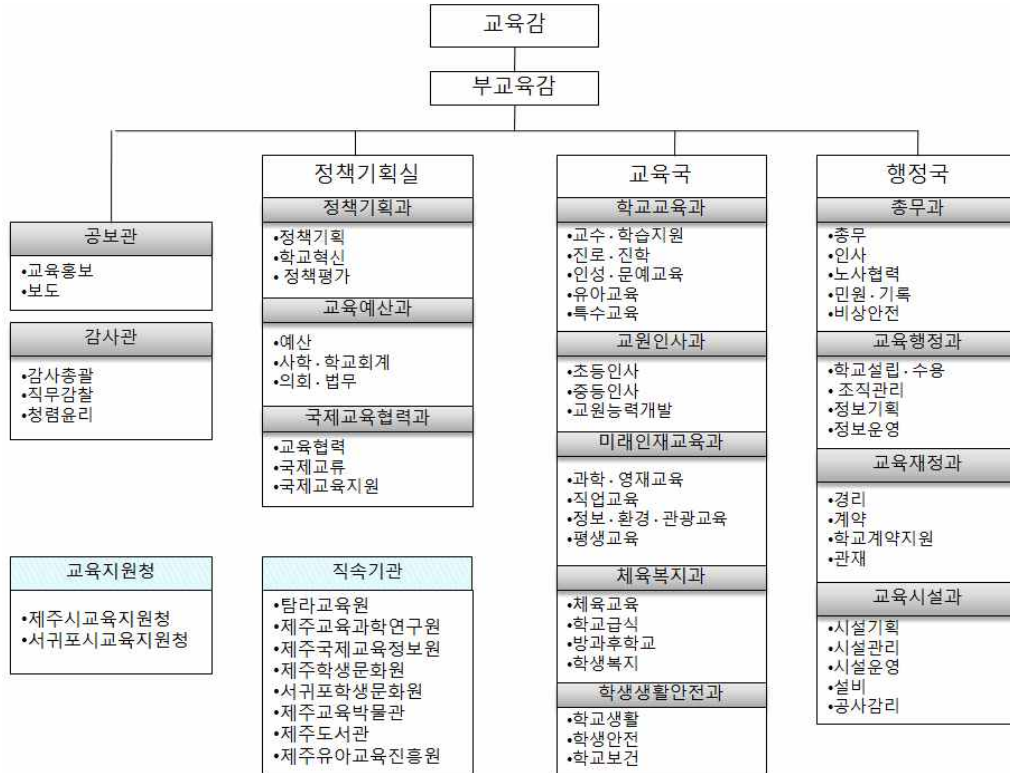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학교 수(유치원 포함)는 317(2018.03.01 기준)개, 국제학교 3개이며, 학생 수는 87,460명, 국제학교 학생 수는 2,898명이다. 교원 수는 6,335명이며 국제학교 교원 수는 472명이다.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이 이루어져 특별자치도의 자치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8.29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건물 준공식이 열렸다. 2014.8.29. 또 유·초·중등 및 대학은 물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대학은 제주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감은 자율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전권을 행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다. 교육청은 1실, 2

6)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17. 12. 31. 기준)

국, 2담당관, 12과로 구분된다. 또한 2개 교육지원청(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 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하며,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2018.04.05.기준).

[그림 III-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도

<표 III-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	기능	
감사관	감사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감사 업무 총괄 • 종합감사 업무 총괄, 종합감사(학사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점검 • 특정감사, 사안조사(본청, 특수학교, 직속기관) • 학교 자율감사
	직무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감찰(공무원 범죄 처분 등)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및 사립학교 종합감사 총괄 특정감사, 사안조사(교육지원청, 중학교) 총괄 감사원, 도의회 행정감사 수검 총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총괄 	
	청렴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 부패방지 시책 평가 업무 총괄 재무감사, 특정감사, 사안조사(유치원, 초등) 초등학교 종합감사(학사분야), 특정감사,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총괄 	
정 책 기 획 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현안 모니터링 총괄 주요정책 개발 및 수립
		학교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점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총괄 국제교육과정 관련 업무 총괄 혁신교육 확산 추진 관리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의 교육권한 배분 업무 총괄 특별교부금 운영 방향에 관한 업무 총괄 교육정책 효율화 시스템 개발 업무 총괄
교 육 국	학교교육과	교수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 기획 및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업무(진로체험 제외) 중등 교육과정 총괄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학습능력평가 운영 업무
		진로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전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교육실습 관련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인성·문 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운영 총괄 인구교육·법교육 관련 업무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컨설팅 장학 업무 • 특수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과	초등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인사 업무 기획 • 교육공무원(초등교원, 교육전문직)정·현원 기획 •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업무 기획
중등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인사 업무 기획 • 교육공무원(중등교원, 교육전문직) 정·현원 기획 • 교육공무원 소청 및 소송 관련 업무 총괄(중등) 	
교원인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연수 기획(직무연수)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 개인 및 학교 단위 평가영역, 지표별 연수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발명교육 업무 총괄 • 수학교육 업무 총괄 • 영재교육 업무 총괄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기획·총괄 • 특성화고 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 • 특성화고 학교평가 업무
		정보, 환경, 관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환경·관광교육 업무 총괄 • 정보·환경·관광 연구학교 관련 업무 총괄 • 학생중독예방 전담기구 운영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총괄 •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 검정고시 및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비영리(공익법인)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총괄
행정국	교육행정국	학교 설립·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학교, 대안학교, 학교법인 설립 및 폐지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배치계획 및 학급 편성 • 유치원 수용계획 및 학급 편성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04.05기준)의 조직도를 연구자가 재정리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

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35조에 따라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첫째,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둘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다) 단위학교

교육기본법 제9조[전문개정 2007.12.21.]에 따라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이들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둘째,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셋째,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넷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다섯째,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6조에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동법 제32조에 기록된 학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학교위원회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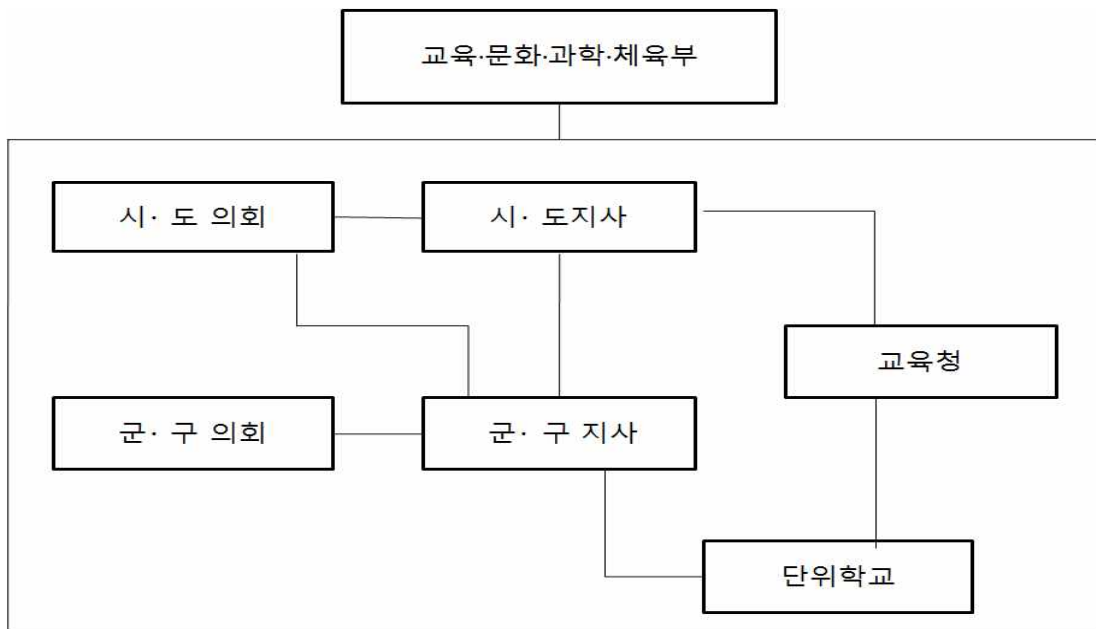
학교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출처: 초·중등교육법[전문개정 2012.3.21.]

2.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몽골의 2002년에 조정된 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교육행정체제는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단위학교로 구분된다. 교육법 제27조에 따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I-5]과 같다.



※ 출처: 교육법(2002) 제27조.

[그림 III-5] 몽골의 지방교육행정 체제

가) 중앙교육행정기관

1)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이다. 교육법(2002) 제28조에 기술되어 있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 <표Ⅲ-7>과 같다.

<표 Ⅲ-7>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한 법률을 전국적으로 실시 • 교육개발을 위한 단기간이나 미래의 계획, 규칙, 규정, 접근, 기본방침,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시책 수립 • 전문적인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직업 방향 수립 • 모든 단계의 교육 기준, 표준 수립 • 시민에게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교육 시키고, 다른 교육기관들의 직업교육, 시민의 교육과 자격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 조정 • 학교장, 교원 개발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사회보장 충족 • 유치원, 단위학교, 대학교와 교육연구기관의 건물, 시설, 수업용, 책, 교재 제공 관리 • 교육기준, 표준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전문대학교들을 보증하는 유치원, 초, 중학교 보증 운영 사무 • 사립 교육기관들을 법률에 따라 지원 • 국제교육 협력 • 외국 대학이나 전문대학교, 연구기관에서 공부할 학생, 교원, 교직을 지원 • 공립 대학교, 전문대학교, 교육연구기관, 공립이면서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장 임명, 해고 • 시·도교육청 관리 • 학생 장학금과 관련 문제 해결 • 교육기관 평가, 감독 • 교육기관 지도자, 교직원, 교원, 학생의 윤리적 규칙 수립 • 공립대학, 전문대학,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원 업무설명서 수립

- 교육기관 보장에 관한 규칙 수립
- 유치원, 단위학교 교사 운영 평가에 관한 규칙 수립
- 공립 유치원, 단위학교, 학교 생활관 음식, 식품에 관한 규칙 수립
- 유치원, 단위학교 교사 자격 향상을 위한 규칙 수립
- 외국 학교 과정을 접목시키고 있는 특수학교의 특별 행사,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규칙 수립

※ 출처: 교육법(2002) 제28조.

이상에서 기술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관한 법률 규정

둘째, 교육개발계획, 규칙, 규정, 접근, 기본방향,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시책 수립

셋째, 시민의 교육, 자격, 능력개발 지원

넷째, 모든 교육 단계의 교육 기준, 표준 수립

다섯째, 시·도교육청 관리

여섯째,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본 규칙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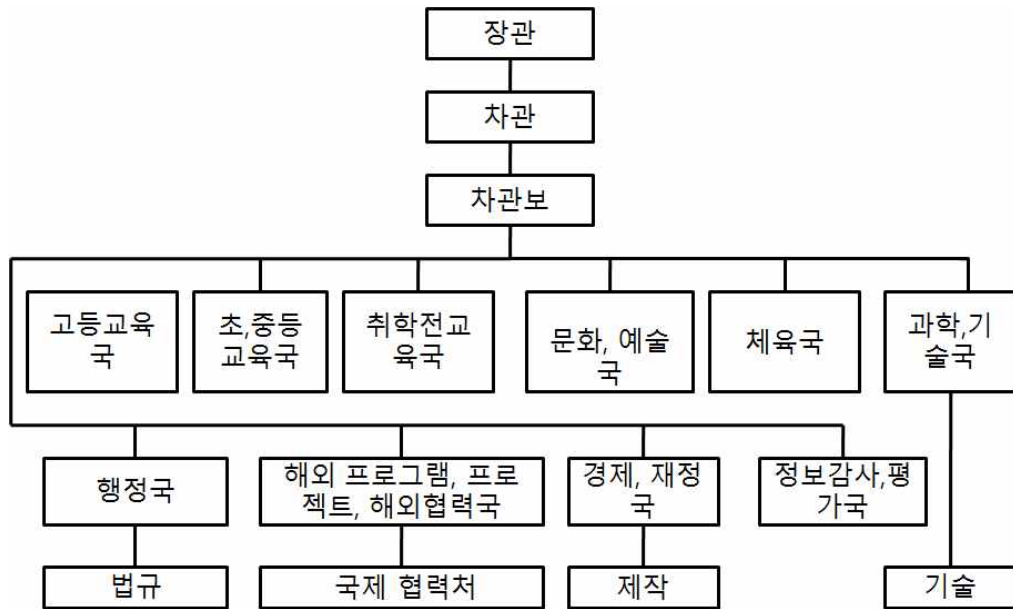
일곱째, 교육과 관련된 모든 평가, 감독 관리 및 지원

2)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구조 및 기능

교육·문화·과학·체육부는 교육정책수립 및 정책시행, 정책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 정책의 평가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몽골의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교육관련 업무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시와 도(아이막), 그리고 군(솜) 등은 새로운 역할에 수행하게 되었다. 몽골 교육 전반의 기본 방향이나 교육과정의 목표 등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가 결정하고 학교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이찬희 2012).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구조 및 업무 전략은 정부에서 정한다. 현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구조 및 주요 기능은 2016년도 “부 업무 전략 및 구조 모델에 관한 지시”로 정하여졌다. 이 지시에 따른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조직도

는 다음 [그림 III-6]과 같다.



※ 출처: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홈페이지.

[그림 III-6]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조직도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장관의 교육적 주요 기능은 교육체제의 개발과 계획,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과서, 책, 전자 자료 정책, 교육, 문화, 과학 체육 분야의 사업, 공공 서비스, 일자리 증가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차관 1명, 차관보 1명을 둔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적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부서별 교육적 주요 기능

구조도		기능
교육 정책실	취학전교육국	취학전교육과 관한 법률안, 정책,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과서,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사무
	초·중등교육국	교육행정제도 개선, 인적자원 개발 지원 초·중등교육과 관한 법률안, 정책, 프로그램

		변경수립, 수행, 교육내용, 교육과정, 평가, 교과서, 수업자료 발달에 대한 사무 교육 행정제도 개선, 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고등교육국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안, 정책, 프로그램 변경 수립 및 수행 고등교육기관 독립적 문제 지원, 행정제도 개선
행정국		인사관리,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법률 실행을 담당, 교육에 관한 기술적 행동, 통계 작성 및 분석
해외 프로그램, 프로젝트, 해외협력국		국제 협력 개발, 향상, 해외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 및 집행
경제·재정국		교육, 문화, 과학, 체육 분야의 경제적 정책, 계획 관리, 예산안 실행
정보감사·평가국		교육, 문화, 과학, 체육 분야에 관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실행 및 교육, 문화, 과학, 체육부의 모든 행동을 감독, 평가 및 분석

※ 출처: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의 교육적 주요 기능을 아래와 같다.

첫째, 취학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법률안, 정책, 프로그램 변경 수립 및 수행, 교육내용, 교육과정, 평가, 교과서, 수업자료 개발에 대한 사무, 교육의 행정제도 개선, 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둘째,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안, 정책, 프로그램 모형을 만들기, 정책 수행하기, 고등교육기관의 독립 지원하기, 행정제도 개선 및 관리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법(2002) 제27.2조에 따라 시·도에는 교육청이지만 동법 제27.1조에 따르면 지역 지방행정기관인 의회와 지사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한 권한은 교육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적 권한

시·도교육청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법률 입안 • 유치원이나 단위 학교의 설립 허가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와 상의 •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증이나 사회 보장을 향상 • 교육기관들의 운영 감독, 인증 • 교육 기관 보고서 관리 • 공립 유치원, 단위학교에 다닐 학생들의 범위에 관한 사무 • 공립 유치원이나 단위학교의 교장 선발 • 사립 교육기관 지원 • 시·도 단위학교 학생들의 유니폼 디자인과 관한 사무
시·도·군·구 의회의 교육적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의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를 심의해서 교육개발 방향 조언 • 공립교육기관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감독
시·도지사의 교육적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의무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실행 • 지역 공립교육기관 설립, 변경, 폐지에 관한 사무를 시·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결정 • 교육기관 소득 증가에 대한 문제, 교실이나 기숙사, 교육시설, 교과서 제공 관리 • 사립교육기관 지원 • 학교 설립에 관한 사무 • 교육부와 상의해서 교육감 임명, 해고 • 소주민족의 교육, 문화, 전통을 지원 • 유치원 건물, 단위학교 기숙사 증축, 기숙사 식품 등 관리 • 공립기술대학 교장 임명, 해고 • 유치원장, 학교장 임명, 해고

※ 출처: 교육법(2002) 제27.2조.

<표 III-9>에 제시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 권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의 주요 권한이다.

- ① 교육에 관한 법률을 지역에 실행하기
- ② 교육기관의 설립 허가, 학교장 선발 등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
- ③ 단위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범위를 정하고 학교 운영을 계속적으로 감독하기

둘째, 시·도 일반행정기관의 주요 교육적 권한이다.

- ① 시민의 의무교육, 직업교육의 대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실행
- ② 교육기관의 설립 허가, 학교장의 임명, 해고 등을 시·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결정
- ③ 교육부와 상의해서 교육감을 임명 또는 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크지만 지방교육행정의 핵심기관은 시·도 교육·문화·예술청이다. 시·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 주요 기능, 운영방안 등은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다. 현재 시·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기본 모델, 기능, 운영 방안 등은 교육부 장관의 2013년도 “시·도교육청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교육 관련 기본규칙은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하며, 시·도지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당해 지역 교육청의 구조를 결정한다. 교육부 장관의 2013년도 “시·도교육청의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규칙은 1장 “규칙의 총칙”, 2장 “교육청 운영방안 및 주요기능”, 3장 “교육청 구조”로 구성된다.

- ① 제1장1조: 시·도교육청의 권한, 기능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이 규칙으로 조정한 다.
- ② 제1장2조: 시·도의 교육청은 교육과 관한 법률, 국가기관에 관한 법률, 중앙교육행정기관, 시·도 도지사의 교육과 관한 결정을 따른다.
- ③ 제1장3조: 시·도교육청은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은 국민의 필요에 맞고 유연

한 교육과정,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결정 등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교육법 제28,1조에 명시된 시·도교육청의 주요 권한을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다음 <표 III-10>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III-10> 시·도교육청의 운영 방안

권한	운영 방안
교육에 관한 법률을 지역의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한 법률, 교육기관의 교육적 결정 등 정보를 계속적으로 안내하기 • 시·도지사의 지역 교육개발에 관한 결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에 실행하며, 실행 결과를 보고하기 • 국가 교육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계획 실행을 위해 유치원, 단위학교 지도자를 지원, 관리하기 • 교사, 교직원 등 교육기관 직원의 윤리 갈등을 예방하기 • 학교 교과서 자료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기 • 학생들의 수료증 발급하기 • 학생들의 식품에 관한 표준, 학교 시설의 안전 등 학생의 사회적 안전을 개선할 때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감독, 평가하기
유치원, 단위학교 설립 허가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에 대한 서류를 분석, 확인하고, 허가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 • 설립, 변경의 허가 받은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에 관한 규칙, 규정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고, 자격증이나 사회보장을 향상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의 인적자원 개발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모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 교사, 교직원 능력, 자격 개발을 지원하기 • 교육의 질, 학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 등을 교육기관 담당자와 협동하여 접목시키기 • 학생 평등 지키기 • 학교나 교육 기관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 밖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 교사, 직원의 평가 과정을 지원하기

교육기관들의 운영을 감독하고 보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 교육기관의 보증을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담당하기 • 지역 교육개발에 관한 연구를 학교, 교사, 직원,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계속하기 • 지역 학교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관련기관과 함께 실행하기 • 지역 국민의 교육 질, 교육 충족, 교육 만족 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교육 보고서를 법률에 정한 규칙에 따라 관련된 기관에 제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등의 실행 결과 분석 보고서를 정해진 기관에 담당기관에 제출하기 •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전략 정보를 모아서 지역 학교, 학생의 정보 파일 구성하기
공립 유치원, 단위학교에 다닐 학생들의 범위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정책, 개발 계획, 지역 특징, 유치원, 학교의 시설, 자원 등을 고려해서 유치원, 학교의 다닐 학생들의 범위를 결정하기 • 교육기관 시설, 건물 안전에 관한 문제 관리하기 • 학교,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지원하기
공립 유치원이나 단위학교의 교장 선발 담당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유치원에 교장의 선발을 정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선발하기 • 학교, 유치원에 교장의 선발에 관한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 • 교육기관의 지도자와 관련된 업무 설명서를 수립하기
사립 교육기관들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립 교육기관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지역 단위학교 학생들의 유니폼 디자인을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 학생들의 유니폼 디자인, 제공, 질적 만족 등을 연구, 분석하기 • 학생 유니폼 디자인, 물질 등을 학부모, 국민, 공공기관들과 함께 결정하기 • 유니폼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실행, 감독하기

※ 출처: 교육·문화·체육·과학부 시·도교육청의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 (2013).

또한 “시·도교육청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시·도교육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체결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역의 대표적 계약자로서 실행하기

둘째, 학생, 교사와 관련된 전략정보 시스템을 지원하기

셋째, 교육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윤리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뇌물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여 교사 및 직원들의 윤리적 갈등을 예방하는 법규 실행하기

넷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해외 교육기관과 협조를 촉진하고, 법률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유치원과 학교를 해외 기관들과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기

시·도교육청은 이 규칙에 정해진 모든 권한과 기능을 실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교육청의 구조를 “재정과 관한 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구조와 구성원 수를 결정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몽골의 지방 행정구역은 수도인 울란바토르(Ulaanbaatar 시)와 21개의 도(Province)로 구분된다. 울란바토르 시와 21개의 도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문화·예술청이 설치되어 있다. 시·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 모델 및 기능은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다.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 울란바토르 시 교육행정기관과 바양-울기 도의 교육행정기관을 예시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울란바토르시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다. 인구는 1,444,447명이며, 몽골 인구의 3분의 1은 수도에서 살고 있다. 울란바토르시는 9개의 구(District)로 구분된다. 6개의 구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위치해 있으며, 3개의 구는 시내 밖에 있다. 울란바토르시의

사무는 시의회와 시지사가 관장한다. 시의회와 시지사는 4년마다 국민선거로 선발한다.⁷⁾ 울란바토르시에는 총 226개의 단위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233,545명이다. 공립학교는 131개, 사립학교는 95개이고, 교사 수는 11,084명이다.⁸⁾

울란바토르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문화·예술청이다.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 모델은 “시·도교육청의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지사가 결정하며, 현재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는 2016년도 “시지사의 교육·문화·예술청 구조에 관한 법령”로 정하여졌다. 울란바토르시 교육·문화·예술청은 교육감, 교육별 담당자들을 포함한 37명의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시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7]과 같다.



※ 출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홈페이지.

[그림 III-7]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조직도

7) www.ub.mn

8) www.mecss.gov.mn

<표 III-11>몽골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부서별 교육적 주요기능

구조도	기능
정책 계획, 법률 실행 담당자	단위학교, 유치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법률에 따라 자주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기
교육과정, 교육연구 관리자	단위학교, 유치원 등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표준 및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실행하며, 교사들의 자격, 능력 등 교사 개발을 지원하기
통계, 감독, 분석, 평가 관리자	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자주적으로 감독, 평가하기,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집행에 대한 감독, 평가하기
예산, 재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자	단위학교, 유치원 등 모든 교육기관의 국가 예산,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예산 등을 관리하기

※ 출처: 울란바토르 시 교육·문화·예술청 부서별 기능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이상에 제시한 울란바토르시 교육·문화·예술청의 교육적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유치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관리하기

둘째, 교육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실행하기, 교사 개발을 지원하기

셋째, 교육기관들의 운영 평가, 교육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감독 및 평가하기

넷째, 모든 교육기관의 국가 예산, 교육적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예산, 재정 등을 관리하기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에는 시·도지사 역할이 크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자기 교육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울란바토르 시지사의 4년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교육적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2017-2020년도 울란바토르 교육 계획

2017-2020년도 시지사의 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유치원 수를 증가하고, 교육률 향상하기 • 표준에 맞는 유치원, 학교 설립을 허가하고 지원하기 •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중인 학교 수 늘리기 • ‘Eco school’, ‘Green kindergarden’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 유치원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 학교, 유치원 구역의 안전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School bus’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 학교, 유치원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제공하기 • 학교에 체육관, 문화센터, 유치원에 학부모 상담 센터를 새로 만들기 •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생들의 교육적 문제 해결하기 • 도교육청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센터를 설립하기 • 평생교육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 학교의 교육수준 높이기 •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몽골 전통, 문화, 언어, 예의 등을 포함하는 학습내용을 추가하기 • 교육과정에 학부모 참여, 감독을 향상시키기 • 교사 능력 개발을 위해 ‘City teacher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 학교, 교육기관들의 교육수준,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 제도를 접목시키기

울란바토르 시지사의 교육 운영계획의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유치원 수 증가 및 교육률 향상
- ② 학교, 유치원 건물, 시설, 환경, 학생들의 안전
- ③ 평생교육, 특수교육, 진로교육 등 모든 교육 지원
- ④ 학부모의 참여, 학생, 교사들의 능력 개발, 학교교육 수준에 대한 문제
- ⑤ 교육과정 평가 및 감독

울란바토르시에는 9개의 구가 있고, 각 구에는 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서가 있다. 구 교육부서는 구지사 업무 밑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지사와 교육청에서 구교육부서의 업무를 관리한다. 교육부서의 구조 및 기능은 시지사가 정한다. 구교육부서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9개 구 중 하나인 바양걸(Bayangol) 구의 교육부서를 살펴본다.

바양걸 구 인구는 216,844명이다. 23개의 동(Khoroo)으로 구분된다. 바양걸 구에는 44개의 학교가 있다.⁹⁾ 구 교육부서의 구조는 시지사가 정한다. 2009년도 “구교육국 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구성된 바양걸 교육부서의 구조는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바양걸 구 교육부서의 구조 및 기능

조직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장 • 전략, 감사, 평가 담당자 • 공식, 비공식 교육과정 담당자 • 초등교육담당자 • 취학전교육담당자 • 재정·재무 담당자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교사들의 연구, 업무 지원하기 • 교육법률, 지역행정기관에서 나온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지역에 실행하기 •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기 • 교육기관들을 평가, 감독하기 • 지역의 교육 정보 보고서를 담당기관의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기 • 공립학교, 유치원의 포함교육의 비율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기 • 사립학교들을 지원하기 • 비공식 교육기관들을 지원하기 • 공립학교의 운영방안, 재정, 예산 계획 등을 평가, 감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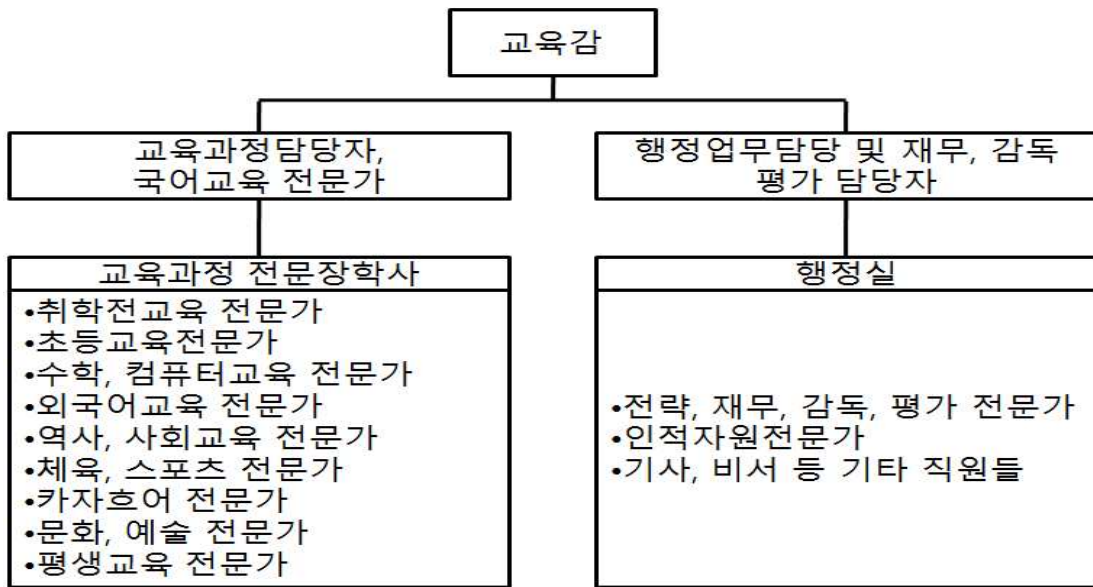
※ 출처: 바양걸 구 교육부 홈페이지.

9) www.bgd.mn

(2) 바양-울기(Bayan-Ulgii) 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바양-울기 도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700km정도 떨어져 있는 몽골에서 제일 먼 지방 행정구역이다. 바양-울기 도는 13개 군으로 구분된다. 바양-울기 도에는 각종 유형의 총 43개 학교가 있다. 학교 재학 학생 수는 22,591명 정도이고 교사 수는 1,493명 정도이다.¹⁰⁾ 몽골의 21개의 도 가운데서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큰 지역이다.

“시·도교육청의 구조 모델, 기능, 운영방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구조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현재 교육·문화·예술청은 도지사의 “도 교육·문화·예술청 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라 27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 [그림 III-8]과 같다.



※ 출처: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 홈페이지.

[그림 III-8]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 조직도

바양-울기 도의 교육·문화·예술청의 교육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4>와 같다.

10) www.mecss.gov.mn

<표 III-14> 바양-울기 도 교육·문화·예술청의 교육적 주요기능

교육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한 법률, 명령, 교육정책,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지역에 실행하기 • 유치원, 단위학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별, 수업별 전문가들을 통해 담당하기 • 지역학교 학생, 교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기 • 학교, 유치원에 다닐 학생 수 늘리기 • 지역 교육기관들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감독 및 평가하기 •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의 예산, 국가에서 실행 중인 교육적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관리하기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크다. 바양-울기 도지사의 4년 운영계획의 명시된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바양-울기 도지사의 2016-2020년도 교육 계획

바양-울기 도지사의 2016-2020년도 교육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능력, 자격 개발을 지원하기 • 유치원의 포함교육률 증가시키기 • 유치원 건물 표준에 안 맞는 건물 새로 짓기 • 학급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유치원들의 학급을 증가시키고, 한 학급에 포함된 학생 수 줄이기 • 소수민족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평등교육 원리를 지키기 • 몽골어, 카자흐어 두 국어로 수업하는 학교, 유치원들을 지원하고, 교과서, 수업 내용 등 서류 번역에 관한 일 실행하기 • 학교 기숙사 건물, 시설, 음식, 안전 등 생활관 환경 개선하기 • 장애인 아동들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학생들의 재능,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 사립학교, 유치원들을 지원하고, 감독, 평가하기 • 학교, 교육, 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접목시킬 방법을 알아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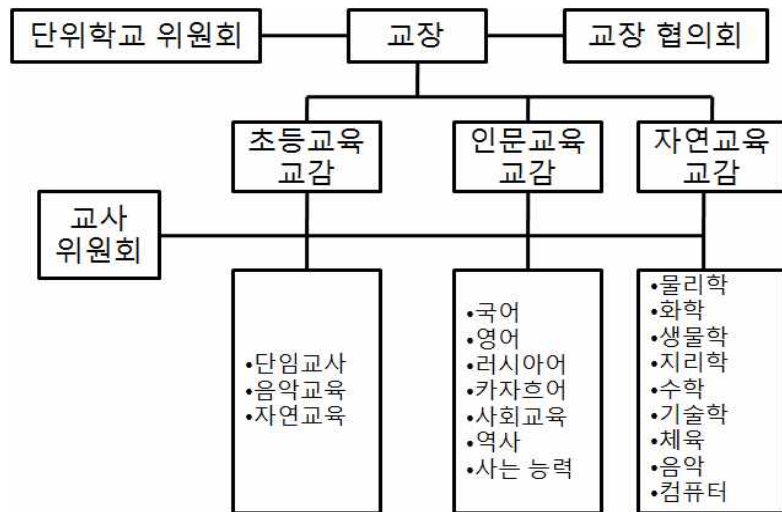
상기에서 제시한 도지사의 교육적 운영계획을 정리하면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교육기관 지원 및 교사, 학생의 능력 개발을 지원
- ② 학교 교육률 증가 및 학급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 해결
- ③ 학교, 유치원 건물, 시설, 환경,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 ④ 교육과정 감독 및 평가 관리

다) 단위학교

몽골의 단위학교는 교육법(2002) 제14.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단위학교의 권한은 상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부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 위임한 것이다. 교육법 3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 및 기타 행정 관리의 권한이 교장에 속한다.

몽골의 단위학교의 행정체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바양-울기 도 알타이 고등학교(Bayan-Ulgii province Altai Soum High School)의 학교 행정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9]과 같다.



※ 출처: 바양-울기도 알타이 군 고등학교의 내부 규정(2017)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그림 III-9] 단위 학교 행정체제 조직도

단위학교의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2002)에 명시된 다음 <표 III-16>과 같은 권한 및 기능을 갖는다.

<표 III-16> 학교 교장의 권한 및 기능

교장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 교사, 직원들의 선발, 임명, 해고 • 교사위원회의 결정을 의거해서 학생의 입학, 퇴학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학부모와 합의 • 국내, 국제 교육기관들과 법률에 따라 합의 •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법, 모델을 학교에 실험하고 접목시키기
교장의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련된 정책, 법률 등을 학교에 시행하고 실행을 감독, 평가 • 학교 개발 정책, 프로그램, 계획, 내부 규정, 규칙 등을 세우고, 실행하기 • 교사, 직원들의 노동 문제, 자격, 능력 개발 지원하기 • 학교 예산, 재정 운영을 학교 위원회,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계획하기 • 학생들의 자기개발 지원하기 • 교사, 직원들의 업무 평가하기 • 학생 및 교사,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지원하기 • 학생들의 권익을 지원하고, 평등교육 제공하기

※ 출처: 초, 중등교육법(2002).

교육법(2002) 제34조에 따라 단위학교에는 학교 조직의 자체 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모델은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른 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9-11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3년간 시무하며, 전체 회의에서 선발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대표자를 회원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첫째, 단위학교의 개발정책을 실행할 때 자기 의견 개진하기
- 둘째, 단위학교 내부 규칙, 구조 모델 정하기
- 셋째, 단위학교 운영 평가하기
- 넷째, 교육의 질, 학생들의 교육 수준과 관련된 사하에 대해 학교장과 심의하기
- 다섯째, 교장의 운영을 감사하고 지원하기
- 여섯째, 교사, 학생, 직원들의 권익 보호하기

일곱째, 단위학교(사립학교)의 학비 수준을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

교육법(2002) 제34조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의 2002년도 230번 명령으로 “단위학교 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와 회원들의 권한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및 회원의 권한과 기능

위원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기 • 회원 회의에서 해결할 문제, 회의 기간 등을 개강 초에 정하고, 회의를 담당하고, 결정내리고 실행하기 • 사립학교에 경우 설립자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담당해야 할 업무 팀을 만들고, 그들에게 운영방향을 결정해 주고 실행 감독하기 •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학교 교장에게 전달하기
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학부모, 학생 등에게 소개하며, 실행 할 때 참석하기 • 위원회 대표자가 정한 업무 실행하기 • 학교 운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관한 일들 지원하기 • 회원 회의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 출처: 단위학교 위원회의 규정(2002)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의 주요 기능은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007년에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단위학교 업무 설명서”에는 학교 교장, 교감, 교사의 업무 내용, 주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학교 업무 설명서에 명시된 교장, 교감의 주요 기능과 업무내용은 다음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학교 교장, 교감의 기능 및 주요 업무

학교장

업무의 목적: 단위학교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이를 감독, 평가, 분석하고,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교사,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표준을 실행할 서비스 제공하기	
기능	업무 내용
교육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법률, 정부 운영방향, 설립자 및 학교 위원회의 결정 등을 학교에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 교육과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운영을 담당할 규정, 규칙을 조정하여 실행하기 • 학교 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행하기 •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학부모와 상의하기 • 국내 및 국제 교육기관들과 법률에 따라 계약하고 협조하기 • 학교정보, 감독, 분석 평가제도 개선하기
교육의 별도로 따라 초·중등교육 표준을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을 학교에 실험하고 접목시키기 • 학생들이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지역 교육서비스를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향상시키기 • 교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의 재학, 퇴학, 수료 등을 담당하기 • 초·중등교육 교육내용, 표준, 과정을 담당하고, 감독하고, 교감, 교사 운영을 지원하기 • 학교교육 보고서를 담당기관에 제출하기
학교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력개발계획, 전략을 정하고 실행

안전한 동료들 지키기	<p>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직원을 선발, 임명, 해고하기 • 동료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 교사, 직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격려하기 • 교사, 학생,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학교 예산, 물적 자원 등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예산, 물적 자원의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하기 • 학교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기 • 학교 예산과 관련된 전략정보를 정해진 기간에 담당기관에 보고하기 • 초·중등교육 표준을 실행할 때 필요한 물적 자원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교감	
업무 목적: 복합 재능에 기초하는 초·중등교육 표준과 교육내용, 교육과정 계획을 학교에 실행하고 이를 감독, 평가하며 교사 수업을 지원하기	
기능	업무 내용
초·중등교육 표준,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행할 계획을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표준,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 개발정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담당하기 • 교육표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 학생 필요성, 특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세우고 실행하기 • 교사의 수업내용 계획을 수립하기 • 수업 시간표, 학급조직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을 계속 계획하기 • 교육표준,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에 실행평가 계획 세우기
초·중등교육 표준,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세우기 • 교사 수업 분석하기 •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 수업 매체를 선택해서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 학생들의 개발, 능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 교사, 직원들의 능력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 표준, 교육내용, 교육과정 운영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감독,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 질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 교사 수업을 규칙에 따라 평가하기 • 교사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듣고 분석하기 • 학생들의 성적표, 수료증 등과 관한 업무실행하기 •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전략정보, 보고서를 규칙에 따라 담당기관에 제출하기 • 교사 자격 허가에 관한 업무 실행하기

※ 출처: 단위학교 업무 설명서(2007)를 연구자가 정리함.

단위학교 교사위원회의 권한과 주요 기능은 교육부 장관(130호 명령)의 1999년도 “유치원·학교의 교사위원회의 업무 규정”에 따라 정한다. 유치원·학교 교사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사로 구성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교장이 위원회의 담당자가 되며, 교감은 위원회의 비서가 된다. 교사위원회는 한 학기에 4번 이상의 회의를 해야 한다. 규정에 명시된 교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학교 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교사위원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교의 개발을 결정하고, 학교 시설과 심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동료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수렴하기 • 교사, 학생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학생 및 교사 자격 등에 대한 의견제출하기 • 중간, 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을 정하기 • 유치원, 학교의 학습계획, 프로그램, 입학 규정에 대해 의견수렴하기 • 학생들의 입학, 퇴학, 졸업 문제의 대해 의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 업무 보고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교육과 관한 법률, 교사 윤리 등을 위반한 교사의 해고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교사위원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학교의 기본 규칙, 교사업무에 관한 규정, 학부모, 학생 기관에 관한 규칙, 학생 평기에 관한 내부 규정, 학교 학습계획, 프로그램, 학생들의 여가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교사 평가의 관한 내부 규정, 교사 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계획 등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하기 초·중등교육 표준의 시행, 교육과정 실행, 교사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학습계획, 학교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교사학습 내용, 방법, 매체 개발하기 학교 자발적(자원봉사 단체)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 출처: 유치원 교사위원회 업무 규정(1999)을 연구자가 정리함.

3.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조직 비교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비교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는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연계체제이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이고, 몽골의 경우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이다. 양국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한국과 몽골의 중앙교육행정체제 비교

	권한	구조	기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과학, 기술교육 진흥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 제도 관리 모든 학생, 교직원, 교원의 안전, 능 	<p>중앙 교육 행정 기관</p> <p>핵심은 교육부이지만 대통령, 국무</p>	<p>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p>

	<p>력개발, 재능, 문제 지원 등과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한 시책 마련 • 국제화교육에 노력,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 국제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p>회, 국무총리도 포함됨</p>	<p>사무 관장</p>
<p>몽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한 법률을 전국적으로 실시 • 국가 교육개발 계획, 기본방침, 교육 기준, 표준 등 정책수립 • 모든 교육기관의 감독 및 평가 관리 • 시·도교육청 관리 • 교육기관과 관련 기본 규칙 수립 • 국제 협력 • 사립학교 지원, 대학교, 전문대학교, 교육연구기관 등의 교장 임명, 해고 	<p>중앙교육 행정의 핵심 기관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이지만 국회, 국무총리도 포함됨</p>	<p>교육정책수립 및 정책시행, 정책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 정책의 평가, 교육 전반의 기본 방향이나 교육과정의 목표 결정</p>

<표 III-20>을 바탕으로 양국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핵심 기능은 국가 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학교 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들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교육, 과학 기술교육, 평생 및 고등교육에 관한 사무,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핵심으로 관리한다. 학교교육,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의 주요 규칙 등 수립에 관한 기본방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몽골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핵심 기능은 국가 교육을 전국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이다. 몽골의 교육부는 국가 교육법 실행, 교육의 기본 정책, 개발계획, 표준, 기준, 교육평가 등 교육과 관한 모든 지도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 관리, 대학, 교육연구기관의 관리 등 권한을 갖는다. 몽골의 교육부는 학교교육, 교육기관들에 대한 모든 기본 규칙, 규정을 정한다.

한국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국가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운영관리 기

능도 갖는 국가교육행정의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비교

한국과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한국과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비교

	권한	구조	기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예산안, 결산, 기채안 등을 의결 심사 또는 작성, 제출 교육 규칙, 교육기관 설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교육학예, 과학기술교육 진흥 재산의 취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및 의결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을 집행, 지원, 감독, 평가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에 관한 법률을 지역에 집행 교육부와 상의해서 교육감을 임명, 해고 교육기관의 설립 허가, 학교장 선발에 대한 사항 단위학교에 학생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시민의 의무교육, 직업교육의 대한 프로그램, 계획 등 제정 	시·도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개발을 지원, 시·도지사와 교육문제로 상의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 개발 계획을 지사운영 계획의 포함시키고 집행하기 지역교육청 관리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관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등을 지역에 실행 지역 유치원, 단위학교 관리, 감독

<표 III-21>을 바탕으로 양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교육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 의결기관의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은 당해 지역의 교육 집행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평가, 설립 등 지방의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사무를 관장한다.

몽골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에 시·도지사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단위학교, 유치원의 장 임명 및 해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통해 지방교육의 집행기능을 갖는다. 시·도지사는 지방교육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교육프로그램, 표준, 기준을 지방에 집행하고, 지방교육기관을 감독,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요약하면, 한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역의 특징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분리,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몽골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반행정에서 결정한 교육적 사항을 실행하는 비독립적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단위학교의 비교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 비교

	권한	구조	기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운영, 학교 재정 관리 • 학교 교육과정 관리 • 학교 규칙 제정, 개정 • 학습자, 학생, 교직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공모 방법, 임용, 평가 •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하고 학생을 교육
		수석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 하며 학생을 교육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교육
		행정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 무를 담당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운영관리 • 학교 교육과정 관리 • 교사, 직원 선발, 임명, 해 고 • 학생, 학습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예산안과 결산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학교의 개발 계획 수립, 실행, 감독, 평가, 분석 • 학교 운영을 담당 • 교사,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표 준을 실행할 서비스를 제공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업무 지원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재능에 기초하는 초·중등 교육 표준, 교육내용, 교육과정 계획을 학교에 실행, 감독, 평 가, • 교사 수업을 지원
		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표준의 시행, 교육 과정 실행, 교사 능력 개발 등 지원 • 학습계획, 학교 교육과정 평가, 분석 • 교사학습 내용, 방법, 매체 개

		발
	교사	• 학생을 교육
	행정직원	• 학교 행정 사무를 담당

<표 III-22>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단위학교 행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 운영, 재정관리, 학생, 교사, 교직원 관리, 학교 감독, 평가 등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교감, 교사, 교직원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IV.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

제3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지방교육체제를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로 나누어 양국의 교육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가) 지방자치 경험 부족

임연기(2008)는 지방교육행정체제는 협의의 정치체제와 행정체제를 포괄하는 지방교육정치행정체제라고 규정한다. 즉 협의의 정치체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의 행정체제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을 지방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인정할 수 없다면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단순히 집행기관인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존립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몽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현행 체제를 보면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집행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즉,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문화·과학·체육부는 몽골의 모든 단계의 교육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전국으로 시행하며, 교육 정책, 교육 표준, 기준, 프로그램, 프로젝트, 교육개발의 대한 기본 계획 등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의 기본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감독, 교육기관들의 기본 규칙도 아직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몽골의 지방교육차지의 개념은 매우 부족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에 관한 집행기능만을 수행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국가에서 결정된 교육을 지역의 실행할 기관인 뿐이다.

2002년부터 몽골은 교육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추진하여 지방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교육기관들의 권한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

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 교육권한의 이양은 아직도 부족하고 불명확하며, 그 권한과 기능의 중복도 많다.

나) 지방교육자치 부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81)는 교육자치제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아직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이러한 교육자치제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 일반행정기관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크다.

몽골의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일반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로 구분된다. 또한 동법에서는 시·도의회, 시·도지사의 교육적 권한을 정하고 있으며, 그 교육적 역할을 살펴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관리 기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교육감 선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나아가 시·도의회와 시·도지사는 지역교육 실행, 교육개발, 학교 운영 등의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은 정치와 분리, 독립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교육행정체제에서 중앙-지방-학교 간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라고 한다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관계는 수평적 구조로 협력해야 하여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의 제도적 관계는 의결기관의 통합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특징되어 있다. 즉, 의결기관은 일반자치의 지방의회의 교육자치의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되어 통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은 단체장과 교육감으로 분리되어 있다(이인회 외, 2011). 그러나 몽골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문제와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교육행정에 시민참여의 불가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시민에 의한 또는 지역주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말한다. 국가차원에서는 시민이, 지방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정치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참여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참여는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하며, 간접참여는 선거를 통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지방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교육위원회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은 시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이 지역교육의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몽골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충족시키는 분야가 많이 있다. 국회, 지방 의회는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하지만 지방교육행정 분야에는 아직도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몽골의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자는 시·도지사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를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선거로 선출하고, 그 선출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지역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두고 교육감을 임명한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라)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적 관리 미흡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충분히 훈련을 쌓은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몽골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지역의 일반행정기관과 지역 여당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전문성의 원리를 실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교육과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자격뿐만 아니라

임기도 불명확하다. 몽골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의 관리자 될 수 있는 자격은 교사 전문가라는 규정밖에 없다. 그리고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학교장의 임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지방의회를 이끄는 여당의 역압이 강하게 작용하며 임기도 계속 바뀌고 있다. 즉 일반행정기관의 선거는 4년마다 운영되며, 이 선거로 인해 지역 여당이 바뀌고 교육감이나 학교장도 그 지역 여당의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이 큰 문제이다.

2.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

이상에서 도출한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권한 이양

교육권한은 중앙에서 지방, 지방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 몽골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 및 일부 의결 권한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당해 지역의 특징 및 사회적 요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만의 특성 있는 교육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당해 지역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연기(2018)는 중앙, 지방 그리고 단위학교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중앙, 지방, 단위학교의 바람직한 관계

단위 : 명(%)

구분	대학교원 연구소연구원	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전체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	2(2.4)	4(40.6)	1(4.2)	7(3.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 확대	11(13.3)	12(13.8)	1(4.2)	24(12.4)
학교 운영의 자율성 증진	70(84.6)	71(81.6)	22(91.7)	163(84.0)
총계	83(100.0)	87(100.0)	24(100.0)	194(100.0)

※ 출처: 임연기(2018: 352).

<표 IV-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3.6%, 지방의 권한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12.4%,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반응은 84.0%를 나타냈다(임연기, 2018).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몽골도 이와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 분권화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관계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단위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은 수평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일반행정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의 지원 기능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지사의 소속기관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육행정에 관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실 한국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임연기(2018)는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대학교원 연구소연구원	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전체
분리, 독립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17(20.5)	18(20.7)	0(0.0)	35(18.0)
운영조직은 분리, 독립되어야 하나 협력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57(68.7)	64(73.6)	22(91.7)	143(73.7)
운영조직 자체의 통합이 필요하다	9(10.8)	5(5.7)	2(8.3)	16(8.2)
총계	83(100.0)	87(100.0)	24(100.0)	194(100.0)

※ 출처: 임연기(2018: 352).

<표 IV-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영조직은 분리, 독립되어야 하나 협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73.7%, 분리·독립의 원칙을 고수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18.0%, 운영조직자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8.2%를 나타냈다. 결과분석을 정리하면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협력적 운영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임연기, 2018).

몽골의 바람직한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구조적 관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학교장 선발과 임명 및 해고에 관한 업무를 시민선거를 통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위상을 확보하여 상호 간에 수평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지방의 특수한 교육정책 개발 추진

몽골의 교육은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고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정책, 프로그램, 교육과 관한 모든 것의 기본을 결정한다. 따라서 몽골의 교육은 도시나 지방, 서부와 동부에서 똑같은 내용, 과정과 방법을 가진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몽골은 유목과 목축업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와 지방 차이가 크다. 이러한 도시와 지방의 문화 차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물론 몽골의 영토가 넓고 인구가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도 많고,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몽골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도시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의 수능 시험 결과와 학업성취도는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 지방교육을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 및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몽골에서는 현대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 교육, 교육과정, 학습 프로그램 등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방교육과 지방의 학생들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몽골은 지방교육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지역과 지역으로 분리해서 당해 지역만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행정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몽골에서는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정책 및 기획이 요구되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방교육 관련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교육행정기관의 감독 및 평가제도 명확화

몽골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제도를 보면 중앙정부, 지방의 일반 행정, 지방의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등 모든 단계에서 감독과 평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단계별로 감독, 평가해야 할 기능 부분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을 감독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감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몽골에는 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중앙 금융감독원에는 국가교육감독을 운영하는 교육감독실이 별도로 있다. 이 교육감독실의 기능을 보면 교육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고 지방감독기관

에도 지방교육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평가기관은 국가교육평가기관이다. 이 기관은 국가 교육의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며, 국가 수능시험도 이 기관에서 실행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모든 단계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금융감독원과 국가교육평가기관과의 감독과 평가에 영역 및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

교육 분야에서 감독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몽골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는 기관별과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권한과 구조 및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분석의 준거를 바탕으로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권한: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둘째,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교육부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체육부를 중심으로

셋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와 바양-울기 도(aimag) 교육행정청을 중심으로

넷째,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

본 연구에서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한국은 국가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운영관리 기능도 갖는 국가교육행정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둘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한국은 지역교육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역의 특징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분리,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반행정에서 결정한 교육적 사항을 실행하는 비독립적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몽골의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단위학교 행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몽골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 경험 부족, 지방교육자치 부재, 교육행정에 시민참여의 불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적 관리 미흡의 네 가지이다.

둘째,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출한 방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권한 이양,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 지방의 특수한 교육정책 개발 추진,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감독 및 평가제도 명확화 등 네 가지이다.

2.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계층별 권한의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권한은 중앙에서 지방, 지방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있으나, 몽골의 경우는 교육권한의 대부분이 정부의 중앙교육행정기관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몽골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 및 일부 의결 권한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당해 지역의 특징 및 사회적 요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만의 특성 있는 교육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당해 지역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권한의 이양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상당 부분이 독립되어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구조이다. 반면에 몽골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구조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지방일반행정기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수직적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 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평적으로 지방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특히 시·도지사의 소속기관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일반행정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의 지원 기능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주요 인사의 임기를 명확히 정해야 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등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기능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전국의 교육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의 의결 및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몽골의 경우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법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지역교육을 수행하는 집행기능만 갖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집행과 관리 기능을 넘어 당해 지역에 대한 의결기능까지도 수행해 나갈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몽골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도 많고,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의 수능시험 결과와 학업성취도는 해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 지방교육을 위한 노력과 프

로그램 및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의결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지역과 지역으로 분리해서 당해 지역만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몽골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연구 범위와 방법의 한계가 있기에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는 문헌연구만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도 경험적 자료를 추가하여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조사 등의 방법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몽골의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 조사하여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지방 및 중앙의 교육행정체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권한과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기관 분리적 관점과 달리 기관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식, 최희선(1988). **교육제도 발전론**. 서울: 성원사.
- 김종철, 이중재(1994).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경기: 교육과학사.
- 김창걸(2003). **교육조직행위론**. 서울: 형설출판사.
- 남정걸(201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경기: 교육과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 신현석, 안선희, 김동석, 김보엽, 박균열, 박정주, 반상진, 변기용, 양성관, 엄주용, 이강, 이일권, 이정진, 전상훈, 조홍순(2012).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이인희, 고수형(2014).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4), 148-159.
- 이인희, 하봉운, 이혜정, 김숙이(201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2012). **한국교육행정론**. 경기: 교육과학사.
- 이찬희(2007).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몽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RM2007-124-2.
- 임연기(2018). **한국의 교육행정 탐구**. 경기: 공동체.
- 유민봉(2016).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2009).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 왕 흥(2011). **한·중 지방교육행정체제 비교 연구: 정부기능 및 역할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동섭, 이윤식, 김재웅(2008).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개발원(1999).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2009). **해외 지방교육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 Altangoo, D. (2015). **한국과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Батдэлгэр, Ц. (1996). *Хүүхдийн оюун ухааны хөгжлийн ерөнхий түвшинг тодорхойлох сорил*. Улаанбаатар.

Madsen, U. A. (1994). *Монгол хүүхд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Наранчимэг, Н., & Төгөлдөр, Е. (2014). *Боловсролын удирдлага* (2дахь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참조 법규>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시행일 2012.03.21., 법률 제11382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시행일 2008.06.22., 법률 제891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1.10.26., 법률 제1091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일 2010.02.26.,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10.09.01., 대통령령 제2223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1.10.15., 법률 제1082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2.03.21., 법률 제1138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12.04.20., 대통령령 제23746호

『Ажлын байрны үлгэрчилсэн тодорхойлолт батлах тухай』 2007.,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йдын тушаал, Дугаар 351

『Аймгаар, Нийслэ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рын үлгэрчилсэн журам батлах тухай』 2013.,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йдын тушаал, Дугаар А/315

『Аймг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рын бүтэц, орон тоо батлах тухай』 2016., Аймгийн засаг даргын захирамж, Дугаар А/321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хууль』 2002.05.03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хууль』 2002.05.03

『Боловсрол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 /2010-2021он/』 2010.,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огтоол, Дугаар 31

- 『Зарим яамд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стратеги, бүтцийн өөрчлөлтийн хөтөлбөр батлах тухай』 2016., Засгын газрын тогтоол, Дугаар 91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нутаг дэвсгэр, түүний нэгжийн удирдлагын тухай хууль』 2006.12.15
- 『Нийслэ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рын бүтэц, орон тоо батлах тухай』 2016., Нийслэлийн засаг даргын захирамж, Дугаар А/635
- 『Төрөөс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2014-2024он/』 2015.,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тогтоол, Дугаар 12
- 『Цэцэрлэг, Сургуулийн зөвлөлийн үлгэрчилсэн дүрэм батлах тухай』 2002., Боловсрол,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йдын тушаал, Дугаар 230
- 『Цэцэрлэг,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нарын зөвлөлийн үлгэрчилсэн дүрэм батлах тухай』 1999., Боловсролын сайдын тушаал, Дугаар 130

〈참고 사이트〉

- 교육부 (www.moe.go.kr)
-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www.sen.go.kr)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www.jje.go.kr)
- 몽골 교육평가기관 (www.eec.mn)
- 몽골 법률 사이트 (www.legalinfo.mn)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www.mecss.gov.mn)
- 울란바토르 시 (www.ub.mn)
- 울란바토르 시 교육청 (www.edub.mn)
- 바양-울기 도 (www.bayan-ulgi.gov.mn)
- 바양-울기 도 교육청 (www.edu.bo.gov.mn)
- 바양걸 구 (www.bgd.mn)
- 바양걸 구 교육부서 (www.bgd.edub.edu.mn)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and Mongolia

Ariunbileg Chuluunbat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In 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uthority, structure and func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Mongolia.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First, what is the author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Mongolia?

Second, what i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Mongolia?

Third, what is a reasonable and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Mongolia?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and Mongolia using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the following analysis criteria.

First, the power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are as follows: central educa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 school.

Second,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cience and Sports in Mongolia;

Third,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Fourth, authority, structure and function of unit school.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between Korea and Mongolia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Korea sets the basic policy of nation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support. However, Mongolia 's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y is the central institution of 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ion which manages and supervises all the affairs related to education and has the function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 can be regard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institution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and central education administrative bodies that can determine and execute all office work related to loc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Mongolia 's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s not only a non - independent enforcement agency that implements educational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set by the government but also implements educational matters determined by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Third, the authority, structure and function of unit schools in Korea and Mongolia are almost similar. The unit school administration of the two countries is centered on the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of Mongol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of Mongol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re four kinds of lack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lack of local autonomy, lack of civic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inadequate professional manage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econd, the measures taken to develop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in Mongolia are to transfer the authority of education as a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separate and independent from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romote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 in the provinces, and clarify the supervision and evaluation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power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and Mongolia, the author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 Korea is transferred from central to provincial and local to the unit schools, but in Mongolia, It belonged to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Mongolian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y.

Second, when we look at the structural aspec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Mongolia,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ar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and have autonomy and manage the affairs related to loc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e of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Mongolia is characterized as a low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and it is operated as an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refore, Mongolian provinci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secure a certain independence from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vertically and be separated from the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Lastly, when we look at the functional aspec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n Korea and Mongolia, in Korea, the centr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function of determining the basic education policy of the whole country. However, It has executive function. On the other hand, in Mongolia,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 has the function of executing the education law nationwide, and in the case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it has only the executive function of performing local education. Therefore, Mongolia '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explore ways to go beyond the enforcement and management functions and to make decisions on the local area.